

한국전자기술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

검 토 보 고 서



충청북도의회
산업경제위원회

한국전자기술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22년 10월 31일

나. 회부일자 : 2022년 11월 2일

3. 제안이유

- 전국 유일의 ‘이차전지 소재·부품·장비 특화단지’ 지정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한 사업 선정으로 구축할 예정인 3개 센터를 동일 부지 내에 집적화하기 위해
-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 무상(만료일: ‘23. 11. 3.)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 중 일부(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송대리 321-2, 321-3)를 분할 하여
- 그 분할된 재산(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송대리 321-4, 26,022.63㎡)을 이차전지 실증기반 집적화 부지로 사용하고자 충청북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행정재산 용도를 폐지하고 일반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였음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,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34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‘한국전자기술연구원’ 과 공유재산 무상대부 계약을 위해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

4. 주요내용

- 위 치 :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송대리 321-4번지
- 면 적 : 15,350.86㎡
- 용 도 : 안전신뢰성기반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분석 테스트베드 구축
- 신청인 : 한국전자기술연구원
- 기 간 : 20년간 대부료 면제(2022. 12. 1. ~ 2041. 11. 30.)

5. 검토의견 (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복순)

가. 제출배경

- 지난해 우리도 청주에 위치한 3개 산업단지*가 전국 유일의 ‘이차전지 소부장 특화단지’ 로 지정(‘21. 2. 23.)됨
 - * 오창과학산업단지, 오창제2산업단지,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일반산업단지
- 우리 도(道)와 산업통상자원부는 ‘안전신뢰성기반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분석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*’ 을 후속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함
 - * 2022. ~ 2024(3년) / 452.9억원(국비 256.1, 도비 105.6, 시비 88, 기타 3.2)
-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우리 도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을 주관기관으로 선정함

나. 제출경위

- (도, 청주시, KETI, 충북TP) 사업 추진 업무협약 : ‘22. 3.
- (행안부) 중앙투자심사 완료(조건부승인 통보) : ‘22. 6.
- (우리도) 오창과학산업단지계획 변경 : ‘22. 8.

구분	기준	변경	비고
용도지역	자연녹지지역	준공업지역	
건 폐 율	20%	70%	

- (우리도) 사업부지 확보 : ‘22. 9.

※ 당초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사용 부지 분할

행정리	기 존		변 경		비 고
	지 번	면적(㎡)	지 번	면적(㎡)	
송대리	321-2	61,776.1	321-2	41,211.4	
	321-3	36,425.7	321-3	30,967.8	
			321-4	26,022.6	사업부지 확보

- (우리도) 사업부지 공유재산 용도변경 : ‘22. 10.

※ (기존) 행정재산 → (변경) 일반재산

- (우리도)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제출(도의회) : ‘22. 10.

다. 종합의견

-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인 사업부지(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송대리 321-4, 1만 5350㎡)를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서 20년간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하여 관련 공유재산법령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제출되었음

- 동 재산에 대한 제6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결과는 원안의결 ('22. 10. 20.)되었음
- 본 동의안은 정부출연연구기관등 또는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로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해당 대부기간이 끝났을 때 그 대부받은 재산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로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3조 단서에 해당하여 공유재산 상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사업내용을 포함함
-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로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31조 단서조항 및 제34조제1항 2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20년간 무상대부할 수 있는 근거가 충족함
- 우리 도가 이차전지 기업 및 기반 집적을 활용하여 전반적인 기술 경쟁력 강화를 선도할 수 있는 R&D 혁신기관인 ‘차세대전지 연구센터’의 충북 이전과, ①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분석 지원, ②기업 R&D 역량강화, ③인력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의 지속적 협업을 위해 공유재산 무상대부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함
- 다만, 민간 비영리법인인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지방보조금으로 영구시설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과 공유재산을 장기간 무상대여하고 향후 해당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부분에 대하여 타당성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
-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에서 당해 재산의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있고, ①보조금 교부

목적 외 사용, ②양도와 교환 또는 대여, ③담보의 제공을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,

-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본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는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우리 도가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함을 조건으로 동의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